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 9. 3.(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1년 8월 25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정의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안 제4조)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사업 (안 제5조)
-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안 제6조)
- 학교의 사업 (안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상담·교육·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상담·치료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연계함으로써 심리적 위기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주요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